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회·시위 중 레이저 등 사용의 제한〉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8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9.

다. 회 부 일 :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 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레이저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레이저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 ----- ----- ----- ----- ----- ----- -----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 ⑤ (생략) <u><신설></u>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포함한다)과 사용 기계·기구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레이저 등 사용의 제한)</u>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레이저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레이저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14조제2항에</u>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생략)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 제2항에</u>----- ----- 5.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¹⁾하고,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장소를 공공의 안녕질서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특정 시간·장소로 한정²⁾하고 있음.

- 1)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또한 집회·시위의 ‘방법’에 있어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확성기, 북, 징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의 방법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현행법상 집회·시위 방법의 금지 또는 제한]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 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³⁾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

3) “국회 돔에 ‘개 도살 금지’ 레이저 쏜 시민단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1129/93076473/1>

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⁴⁾, 위 사건의 경우 기술을 활용하여 100미터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100미터 이내의 근거리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국민적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 건물에 특정 정치적 메시지가 투사될 경우 해당 메시지가 마치 국회의 의사인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는바, 향후 무분별한 레이저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국회의사당 돔 등이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구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레이저 등에 의한 집회·시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에 명확화·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 5. (생략)

참고로, 법 제14조는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만을 금지하고 있어,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치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레이저 등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등 사용의 허용기준을 법령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⁵⁾.

또한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호는 시위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사용 기계·기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시위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어느 범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 ② 현행법 제14조는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집회·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5) 참고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1~4종으로 구분)으로 지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별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은 별표1에서 ‘주거지 연직면 조도(럭스(lx) 또는 lm/m²)’ 및 ‘발광표면 휘도(cd/m²)’ 측정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별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측정값은 빛공해를 유발하는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또는 광고조명 등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① 해가 진 후 가급적 검은색 옷을 입고 측정하여야 하고, ②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오는 경우 측정할 수 없고, ③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 측정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므로, 이를 국회의사당 등의 인근에서 해가 뜬 시간에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밖에, 체계·자구상의 문제로는 ③ 법 문언상 ‘시위’가 아닌 ‘집회’의 경우 신고서에 사용 기계·기구를 기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어 ‘집회’ 주최자의 경우 레이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④ 안 제6조제1항제6호는 사용 기계·기구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뿐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안 제14조의2에서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①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